[서식 예]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(대위)



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

채권자 ○○○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◇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

목적물의 가격 ㅇㅇㅇ원

신 청 취 지

- 1.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2.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.
- 3.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피보전권리

가. 채무자는 20○○. ○. ○. 신청외 ●①●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형 임차보증금 9,000만원,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●○. ○. ○.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・거주하고 있습니다.

★ 대한법률구조공단

- 나.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○○. ○. ○.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◎②◎에게, 그리고 20○○. ○.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◎③◎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. 따라서 신청외 ◎②◎ 및 신청외 ◎③◎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.
- 다. 한편, 채권자는 20○○. ○. ○.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청외 ●③●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,000,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고, 채무자는 같은 날 신청외 ●③●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○○. ○. ○. 도달하였습니다.
- 라.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●③●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○ ○. ○.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 ●③●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,000,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●③●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2. 보전의 필요성

그러나 채무자는 신청외 ◎③◎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, 신청외 ◎③◎는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한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는 바,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◎③◎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,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◎③◎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,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◎③◎ 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,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◎③◎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.

3. 담보제공

채권자는 이혼 후 위자료, 양육비 등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,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

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소 명 방 법

 1. 소갑 제1호증
 채권양도계약서

 1. 소갑 제2호증
 임대차계약서

1.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소갑 제4호증 채권양도통지서

첨 부 서 류

 1. 위 소명방법
 각 1통

 1. 건축물대장등본
 1통

 1. 송달료납부서
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[별 지]



부동산의 표시
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
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◎◎빌라 나동

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

1층 000.00m²

2층 000.00 m²

3층 000.00 m²

4층 000.00 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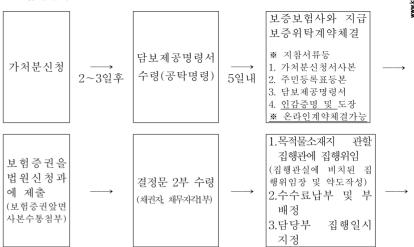
지층 00.00 m²

중 **3층 301호 124.98㎡**. 끝.

제출법원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부동산목록 5 부정도 첨부) 관 런 법 규 민사집행법 제300조
불복절차 및 기간	(채권자) ·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1조 제2항) ·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민사소송법 제444조) (채무자) ·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 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 등 ·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 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·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 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
비 용	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목 적 물 가 액	 ・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・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/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) ・토지의 목적물가액: 개별공시지가/㎡×면적×30/100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) ・건물의 목적물가액: (☞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)
기 타	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음(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4253 판결).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4253 판결).

※ 집행절차

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 보



○6 1 대한법률구조공단

- 1.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
- 2. 집행관 공시서부착
- 3. 집행관 집행조서작성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